#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판 결

사건 2023고단205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예지(기소), 김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상우

판결선고 2023.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인천 남동구 B ㈜ C에서 피해자 D (주)와 시가 64,1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료 월 1,063,700원을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부터 2021. 6. 2.까지 총 17회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총 45,638,115원을 미납하여 2021. 8. 11.경 피해자에게서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2021. 9. 경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서 반납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E가 리스료를 내고 계약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1. 2.경 E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1. F의 경찰 진술조서
- 1. 자동차 운용리스 신청서, 자동차 리스 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통보, 리스계약 해지예정 통보, 리스료 수납 원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조건부로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나 E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였고, 그 사람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차량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불법 영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 22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에게 인도한 행위는 피해자의 재물을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리스 계약 해지 위약금을 아끼고자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는 E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E에게 리스료 납부와 계약 승계라는 조건부로 차량을 인도하였다거나 E에게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판사 김수정